

용인 성북역 롯데캐슬 파크나인 민간분양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홈페이지 게시용)

○ ㈜ 케이에스케이펀드 K1801-26-01(2018.1.26)호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 33세대

지 구 (공급유형)	신청형	배정호수	비 고
합 계		33	○ 입주자 모집공고 : 2018.2.2.(금) 예정 - http://park9.lottecastle.co.kr
성북역 (민간분양)	84A	15	○ 공급처 : 시행) (주)케이에스케이펀드, 시공) (주)롯데건설
	84B	18	○ 공급위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195-2 번지 외 23필지 일원 ○ 분양문의 : 견본주택 ☎ 1644-9322

※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

※ 상기 공급세대는 경기도 장애인을 포함한 타 기관 통합 배정물량으로 기관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현장 추첨에서 탈락할 수 있음

○ 신청대상 : 신청일 당시('18.2.1)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세대주, 세대원,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특별공급을 중복신청한 경우 우선 선정 발표된 것만 인정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8. 1. 31(수) ~ 2. 1(목)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읍·면·동 비치), 신청자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세대주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있는 분에 한함)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등급 점수 > 세대원중 장애인 수 점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 세대원 수 점수 >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점수 > 신청자 연령 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예: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년,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 신청시 유의사항

- 경기도 : 2009년부터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주택의 계약여부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신청 제한(최종 당첨자에 한함)

※ 기관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공급업체 현장 추첨에서 탈락한 경우는 제외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 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 공급처 → 경기도(1.29) → 시·군 통보 및 읍면동 신청·접수(1.31~2.1) → 경기도 신청자 취합(2.2) 및 국토부 주택전산검색 의뢰(2.2) → 국토부 결과회신 및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2.5)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확정 대상자 게재(2.5)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시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2015.12.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 -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 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제28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단, 임대주택은 제외)

- 상기 내용에 따른 무주택 소명자료는 반드시 대상자발표 전날까지 제출해야 인정